

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
[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]
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45조제1항(위해식품등의 회수)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(식품유형) : 팔앙금(조림류)

나. 제조일자 : 2018. 6. 28.

다. 회수사유 : 대장균균 기준초과
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의무회수

마. 회수영업자 : 강경원 외 1명

바. 영업자주소 :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7, 4층(성북동1가)

사. 연락처 : 02) 741-1199
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(보건소) 보건위생과 (☎ 02-2241-6172)